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패키지별로 구분한다.

※ 패키지별 1인 1계좌 (최대 1인 2계좌까지 가능)

가입구분	새출발 희망	새출발 행복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가정,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개인신용평점 상위 92% 초과 개인, 협동조합종사자, 소상공인

② 이 예금의 가입대상에 대한 정의 및 해당 확인서류는 아래와 같다.

새출발 희망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근로장려금수급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	근로장려금수급사실 증명,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 환급금통지서(세목: 근로장려금)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결혼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가족관계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서

새출발 행복		확인서류
헌혈자	좌 등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 * 헌혈 횟수 5회 이상
입양자	좌 등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장기.골수기증자	좌 등	장기.골수기증 희망등록증 등
다자녀가정	가입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수가 3명 이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봉양자	가입일 현재 만 20세 이상 가입자가 부모 봉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좌 등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신용평점 상위 92% 초과 개인	좌 등	실명확인증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협동조합종사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납입증명서 또는 조합원증명서
소상공인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저축방법】

-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은 납입 회차당 월 1만원 이상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3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하여 희망패키지는 최고 연 2.2%p, 행복패키지는 최고 연 0.5%p를 적용한다.
 1. 신규 가입일 현재 희망 또는 행복패키지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 연 0.2%p
 2. 만기일 당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 실적 금액별 차등적용하며, 희망패키지는 최고 연 2.0%p, 행복패키지는 최고 연 0.3%p 제공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희망	행복	
가입자 우대	가입대상에 해당될 경우	0.2		
자동이체 거래 우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 해당 시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	0.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5	0.2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0	0.3

-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

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 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가입자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적용한다.
 - ③ 자동이체거래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한다.
 1. 만기일 당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된 횟수가 계약월수의 2/3 이상
 2. 납입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월 평균 금액이 금액 대별 실적에 해당할 경우
- ※ 예1) 새출발 희망패키지, 가입기간 12개월 - 총 12회차 납입의 경우 → 8회차($12 \times 2/3$)이상이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통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에 해당하며
- 예2) 1회차~4회차까지 15만원, 5회차~8회차까지는 25만원을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 월 평균 금액은 20만원 ($15 \times 4 + 25 \times 4$)/8

이므로 가입자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2%p 우
대금리 제공

※ 단, 계약월수의 2/3 개월수가 소수점까지 나올 경
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계약기간이 8개월, 계약월수의 2/3 = 5.3 개
월일 때 5개월로 산정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
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
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
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
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
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특별중도해지】

-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 6.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제14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 ③ 이 예금의 새출발 희망패키지 판매한도는 50,000좌로 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